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4. 16.(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출자 : 이필테 의원 외 4인
- 제출일 : 2021. 4. 13.
- 회부일 : 2020. 4. 13. (의안번호 : 21-42)

2. 제출이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등 책임), 제4조(정의),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나. 예산조치 : 기 시행중으로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4. 9. ~ 2021. 4. 14.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되었습니다.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마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과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예산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를,
-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서울시 및 16개구 제정 시행

- 강남, 강동,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초,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 2021.3.31. 현재 마포구의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 가족 수 현황은 총402세대 974명으로 이중 모자 가족이 317세대 769명으로 전체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자는 5개 시설에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1} 마포구 한부모가족 현황

(2021.3.31. 사회보장시스템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합 계		모 자		부 자		조 손		청소년 한부모 (부모가 만24세 이하)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402	974	317	769	80	196	2	3	3	6

{표2} 마포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2021.3.31. 기준)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운영체	전화번호	종사자수	수용인원		비고
								정원	현원	
계							20	62	30	
1	미혼모자기본 생활지원형	마포애반원	새창로4나길 5 (도화동)	이숙영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711-4725	6	12	6	국·시비 지원100 %-운영비
2	미혼모자공동 생활지원형	애란영스빌	희우정로20길 44-13 (망원동)	표승희	"	333-4725	3	20	12	-아이돌봄 -상담치료 등
3	"	아름뜰	양화로8길 32-3 (서교동)	이현주	홀트 아동복지회	334-4614	3	20	10	
4	"	마포클로버	동교로135-4 (서교동)	김미현	"	322-3325	2	10	2	
5	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KUMSN	성산로2길 41, 301호(성산동)	오향린	한국미혼모 자원네트워크	734-5007	4	이용시설		지원없음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마포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첨부: 1. 관계법령

[첨부 1]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12. 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2., 2014. 1. 21.,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